

성남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 규칙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1354
----------	------

2004. 3. 24.

□ 제안이유

- 의정발전과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의정포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주요골자

- 의회 의정포럼의 구성은 현직 의원을 당연직으로 함(안 제3조제1항)
- 원활한 의정포럼 추진을 위하여 대표와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둠(안 제3조제2항)
- 대표는 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는 의장이 지명하며, 서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함(안 제3조제3항)
- 의정포럼의 의제는 다음 각호와 같음(안 제4조)
 1.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
 2.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·정책 개발
 3.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토론
 4.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
- 의정포럼은 토론회 및 세미나, 강연회 등을 위하여 개최할 수 있음(안 제5조제1항)
- 의정포럼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(안 제5조제2항)
- 의제에 따른 초청 토론자의 수와 대상은 대표와 간사가 협의하여 정함(안 제5조제3항)
- 공무원 및 현직 의원이 아닌 초청 토론 참여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(안 제6조제2항)

□ 검토내용

- 토론문화는 민주주의 기본이라 생각됩니다.
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으나
초유로 우리시의회에서 발의된 규칙안인 만큼 충분한 토론을 거쳐
입안 내용을 검토 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이 없는 규칙안이라
사료됩니다.
- 포럼문화가 좀더 정착 발전하려면 정책안에 대하여도 심의에 앞서
전문인들이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토론이 선행된다면
포럼 문화가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.
-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선례가 없고 비교분석할 수 없어
안타깝습니다만 심사후 가결이 된다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
절차에 따라 보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.